

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서

“대구대학교”, “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” (이하 “협약기관” 이라 한다)은 (는)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“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”란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,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-교육청-기업-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협력 사항)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.

1. 학교의 미션 및 비전, 산학 융합 교육 계획과, 취업-성장-정주 지원을 통한 학생의 지역인재로서의 성장 계획 등을 담은 교육 플랜
2.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계획
3.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협조

제4조(협력 범위) ① 교육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기타 협약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‘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’으로 본다.

제5조(비밀 유지)

1. 각 협약기관은 업무 진행 시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,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
2.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.

제6조(신의성실)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효력 발생 및 변경)

1.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2.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)

1. 본 컨소시엄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은 '26.3. ~ '30.2.(5년)으로 한다.
2.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기간 내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운영 기간 종결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3.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이 갱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노력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.

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4월 4일

대구대학교

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

총장 박 순 진

(인)

교장 김 종 원

(인)

